

# 2025년도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통합 공고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지원 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 1. 지원개요

- (사업명)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지원사업
- (지원규모) 총 16백만원(국비 16백만원)
  - 규제대응컨설팅 : 최대 1백만원/2개사 내외(기업부담금 25%, 부가세 제외)
  - 시설개선 : 최대 7백만원/2개사 내외(기업부담금 25%, 부가세 제외)
- (지원기간) 협약일 ~ 2025. 10. (5개월)

## 2. 지원대상(신청기업)

- (지원자격)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 중 사업장 안전성 확보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한 기업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구 분		신청자격 요건
공통	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역중소기업법」 상의 지역중소기업 (중소기업<sup>1)</sup>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sup>2)</sup>)<u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li><li>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li></ul></li><li>·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li></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산업분류코드(KSIC) 기준 제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li></ul>

○ (신청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3. 세부 지원내용

○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안전관리컨설팅지원 + 시설안전성개선지원)

※ 안전관리 컨설팅 및 시설 안전성 개선 함께 신청 필수

-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 화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대응을 위한 안전컨설팅
  - 시설 안전성 개선 지원 : 사업장 사고 예방,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시설 및 환경의 안전성 개선 지원
- ※ 유의사항 : 공정개선, 자산성 물품 구입, 사업장 사고 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구분	지원항목		지원예산
안전·규제대응 컨설팅 지원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전과정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및 개선지원 · 1:1전문가 작성 방법 교육	정부지원금 최대 1백만원 (VAT별도)
	사업장 안전진단	· 노후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고압·독성가스, 전기·방폭설비 등 종합진단	
	중소기업 특화교육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p style="text-align: center;"><b>시설안전성 개선지원</b></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연소재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소재</li> <li>· 안전밸브, 파열판 등 폭발 등을 예방하는 안전장치나 방호장치</li> <li>· 용접, 사상 등 불꽃비산방지포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시설</li> <li>· 정전기 방지용 바닥재 등</li> <li>· 추락방지사설(사다리, 안전대, 부착설비, 개구바(채광창 포함) 등 안전덮개, 난간,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li> <li>· 특별관리물질 및 안전검사 대상 물질, 발암성 및 급성독성물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설비(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li> <li>·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폭발 예방설비) 환기팬 및 덕트, 임시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등), 용접작업 불연포, 이동식 포 소화설비, 가스검지 및 경보기, 복합가스농도측정기,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등</li> <li>* (기타설비) 건축물 내화 공사, 방폭형 전자기계기구장비 등</li> </ul> </li> <li>·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방호장치 설치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정부지원금 최대 7백만원 (VAT별도)</p>
--	---	---	--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견적서를 기초로 사업비 구성하며, 견적서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사업비 계산식

- 예시1) 총사업비 9,333천원(100%) = 정부지원금 7,000천원(75%) + 기업부담금 2,333천원(25%), VAT별도
- 예시2) 총사업비 1,333천원(100%) = 정부지원금 1,000천원(75%) + 기업부담금 333천원(25%), VAT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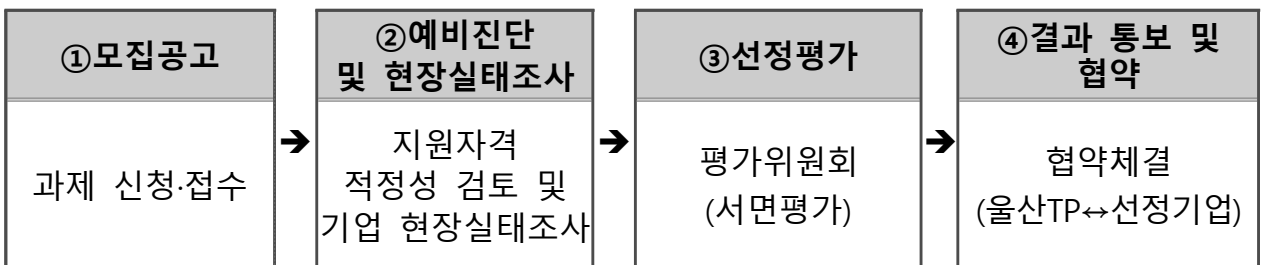
##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현장조사  
→ 서류평가
- (선정기준)

구 분	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	선정기준
서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하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계산함</li> <li>- 최고 또는 최저점수 중 같은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필요성(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의 명확성, 지원의 필요성) (20점)</li> <li>- 사업적정성(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안전관리 역량 및 환경개선의 의지 등) (20점)</li> <li>- 타당성(지원내용, 점위, 일정의 구체성, 지원 후 성과 도출 가능성) (20점)</li> <li>- 기대효과(연구개발,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가능성, 산업안전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 기여 가능성) (30점)</li> <li>- 기타(사업비 운영 적정성, 사업 활동 계획의 적정성) (10점)</li> <li>- 평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기업부터 선정</li> </ul>

## 5.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 공고일로부터 5월 9일(금)까지
- 선정평가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4. 10.(목) ~ 5. 9.(금)
- (접수기간) 2025. 4. 14.(월) ~ 5. 9.(금) 18:00 까지
- ※ 목표 기업 수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제조분야 안전관리 통합지원 시스템(www.msis.or.kr)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지원신청(사업장시설개선 설비지원, 사업장 안전규제 대응컨설팅) → 서류일체 이메일(mykim@utp.or.kr) 제출

## 7.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구분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서식여부	비고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1	필수
2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필수
3	견적서(사업비 산출근거로 활용)	-	필수
4	기업 부담금 현금출자확약서	붙임2	필수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3	필수
6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붙임4	필수
7	기업 대표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5	필수
8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선정 후 협약시 제출	필수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8.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 서류가 발생 될 경우 접수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하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할 수 있음
- 이외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단,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 사업비 사용 가능)

## 10.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류/발표/현장) 등에 이의가 있는 때
- 이의신청 방법(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
  - (신청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 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제출서류) [붙임 6.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첨단화학기술지원단 소재품질평가센터로 이메일(mykim@utp.or.kr) 제출
  - (작성방법) 신청기업(기관)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 11. 관련법규

- (지원근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산업 공통운영요령

## 12. 문의처

구분	담당자	소속	연락처	이메일
사업담당자	김민영	첨단화학기술지원단	052-219-8719	mykim@utp.or.kr